긴급 입찰 사유서

□ 개 요

○ 과 업 명: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 개선

○ 사업기간: 계약 후 360일

○ 예산총액: 280백만원(부가세 포함)

○ 입찰 및 계약방식: 제한경쟁입찰(낙찰자 결정방법: 협상에 의한 계약)

□ 사업목적

○ 매년 4월까지 실시되는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시스템 기능 개선

- 화학물질 검증서비스 일원화 및 배출량·배출저감계획서 심사 기능 개선 등

□ 긴급입찰 사유

○ 법적근거

-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1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*에 따른 배출량 조사 업무** 수행

* 제2025-52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

** 배출량조사 주요업무: ①사업장교육, ②조사결과 검증·공개, ③조사결과 분석 등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5조제4항의1의2

○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**일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수행**하기 위한 **신속한 지원사업 추진** 필요

○ 입찰에 따른 **공고기간 장기화(40일 이상)시 과업의 착수기간 지연**으로 배출량 조사 업무*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**긴급입찰 필요**

* 사업장 기술지원, 조사표 검증 기간 연장(대국민 공개 시기 연장) 등

화학물질안전원